



# 가정통신문

## -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-

전화: 063)533-4123

발행일: 2022. 4. 8.

담당부서: 학생생활부

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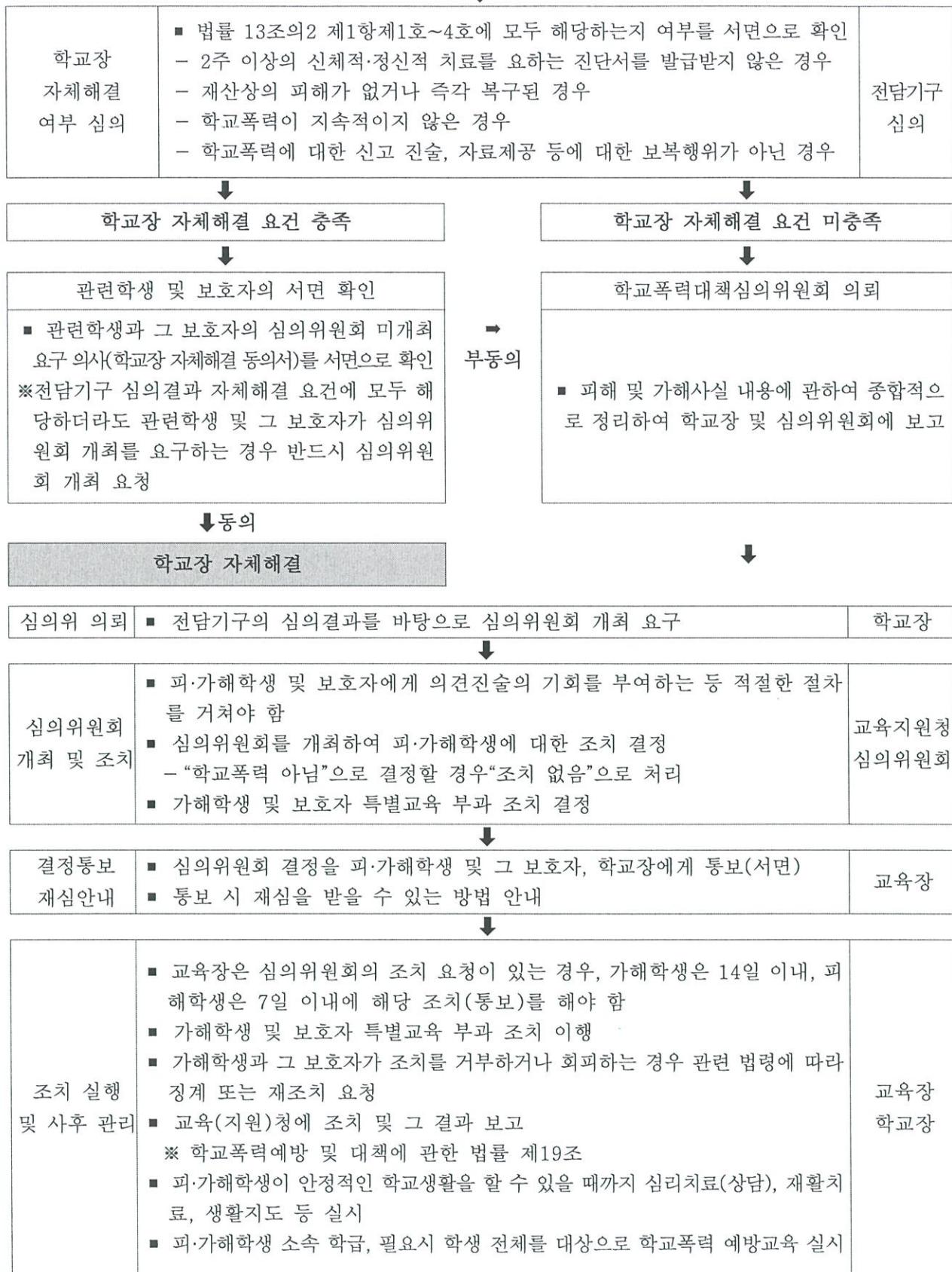
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(이하 '학교폭력예방법')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주요 법률 및 지침

-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-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나.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절차

단계	처리 내용	비고
폭력사건 발생인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사건현장 목격, 117신고센터의 통보,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, 학생,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(책임교사 등)에 신고</li></ul>	
신고접수 및 학교장 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 된 사안을 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, 학교장, 담임교사에게 보고하고, 신고자 및 관련학생 학부모에게 통지</li><li>■ 사안이 중대한 경우,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에게 즉시 보고</li></ul>	학교폭력 전담기구
즉시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필요 시 관련학생(피해학생과 가해학생) 즉시 격리</li><li>■ 신고·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(안전)조치</li></ul> <p>&lt;피해학생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성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,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·신체적 피해 치유(반드시 수사기관 신고)</li><li>■ 피해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조치 실시</li></ul> <p>&lt;가해학생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,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,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주인</li></ul>	학교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
사안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관련학생(피·가해학생) 면담, 주변학생 조사, 설문조사,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</li></ul></li><li>■ 관련학생(피·가해학생) 심층상담</li><li>■ 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및 폭력 행위 경증 판단 요소 파악</li><li>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필요 여부 판단(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)</li><li>■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유의</li><li>■ 교육(지원)청에 신속 보고(48시간 이내)</li></ul>	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
관련학생 부모면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조사결과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,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(예견되는 조치 사전 언급 금지)</li><li>■ 피·가해자 조치 불필요 시 동의서 및 확인서 징구</li></ul>	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



2022. 4. 8.

배 영 고 등 학 교

